

보도시점 2026. 6. 30.(화) 조간 배포 2026. 6. 29.(월)
2026. 6. 29.(월) 12:00

“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,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” 단기보호 제공 주·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

-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보호자 96.8% 만족, 부양스트레스 33.4% 감소 -

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,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.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)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·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‘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’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.

주·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,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, ▲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, ▲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주·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.

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주·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.

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.8%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.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, 여행,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. 이에 따라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확대되었다.

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(수)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,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*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.

*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

주·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(단기보호), 연 12일 이내(가족휴가제*) 이용이 가능하며,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
*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(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)

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살던 지역과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, 가족은 안심하고 휴식과 경제·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임을기 노인정책관은 “주·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,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2026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개요

담당 부서	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02-3380)
		담당자	사무관	권고운 (044-202-3499)
	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	책임자	부 장	홍성현 (033-736-1904)
		담당자	팀 장	이보영 (033-736-1970)



□ **추진배경**

- 갑작스러운 어르신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보호가 필요하나, 수요 예측 불확실 등으로 기관 수 확대 한계('25년 96개소)
- 전국 확대 기반 마련 등 시범사업 확대 추진으로 접근성 강화를 통해 수급자의 지역사회 재가생활 지원 및 가족 수발부담 완화

□ **사업 내용**

- (이용대상) 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(가족휴가제만 이용가능)
- (참여기관) '25년 412개소 → '26년 471개소로 확대(기존 참여기관 연장 + 신규 기관 공모 선정)
 - 기존 기관 388개소*, 신규 참여기관 83개소
 - * 기존 참여기관 중 폐업, 시범사업 연장취소 등 운영종료기관 제외
- (이용일수) 단기보호(월 9일 이내)+가족휴가제(연 12일 이내)
 - * 단기보호시설 이용일과 시범사업 내 단기보호 이용일은 합산 적용하되,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단기보호급여 내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
- (급여비용) 주·야간서비스비용(야간가산 포함)+야간운영비용(64,000원)
- (월 한도액)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
- (입소정원) 시설 규모별 1일 이용가능인원 4~8명

구분	주야간보호기관 정원		
	30인 ~ 39인	40인 ~ 49인	50인 이상
이용가능인원	4명	6명	8명

□ **문의**

-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(www.longtermcare.or.kr)
-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(033-736-1970~2)